

의안번호	2200189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4. 6. 26.
추 계 번호	24C05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출산크레딧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로 변경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811억원, 2029년 9,11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조 9,352억원(연평균 7,87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6,811	7,166	7,797	8,460	9,118	39,352	7,87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출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해당 시점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무제한)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지출성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출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
 -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점으로 명시
 - －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출산 또는 입양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을 가정
 - －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출산·입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
 - －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음
-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할 A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을 활용
 -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부터 법 시행을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¹⁾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 (8.0%)을 차감하여 활용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²⁾에서 제시된 2022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2022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 첫째 58.2%, 둘째 33.7%, 셋째 6.8%, 넷째 이상 1.2%
 - 다섯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출생아 중 0.3%에 불과하여 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섯째 이상 자녀는 넷째로 가정하여 추계

[표 2]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0세 인구	217,226	217,079	227,833	237,996	247,279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848	199,713	209,606	218,956	227,497
1아	116,292	116,213	121,970	127,411	132,381
2아	67,338	67,292	70,626	73,777	76,654
3아	13,671	13,662	14,338	14,978	15,562
4아	2,547	2,546	2,672	2,791	2,9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1)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2)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를 적용

[표 3]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5~2029년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민연금 A값(A)	3,150	3,322	3,446	3,575	3,707
보험료 지원 단가(A×9%)	283	299	310	322	334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811억원, 2029년 9,11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조 9,352억원(연평균 7,870억원)으로 추계됨

[표 4]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6,811	7,166	7,797	8,460	9,118	39,352	7,8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